

[별표 6] <개정 1996.1.18>

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(제25조관련)

1.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

| 구 분   | 1.5미터까지  | 3미터까지    | 5미터까지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멧 쌓 기 | 1 : 0.30 | 1 : 0.35 | 1 : 0.40 |
| 찰 쌓 기 | 1 : 0.25 | 1 : 0.30 | 1 : 0.35 |

2.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| 구 분 높 이                |     | 1.5미터까지 | 3미터까지 | 5미터까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석 축 용 돌 의 뒷 길 이 (센티미터) |     | 30      | 40    | 50    |
| 뒷 채 움 돌 의 두 께 (센티미터)   | 상 부 | 30      | 30    | 30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하 부 | 40      | 50    | 50    |

3.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. 다만,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| 건 축 물 의 층 수 | 1층  | 2층 | 3층 이상 |
|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|
| 띄우는 거리(미터)  | 1.5 | 2  | 3     |

4.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, 강관 또는 흙관으로 하고,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

5.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,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

6.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.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